**전환사채 인수계약서**

**2018. 01. 29**

**주식회사 더콘텐츠온**

**전환사채 인수계약서**

아래의 당사자들은 [2018]년 [1]월 [29]일 다음과 같이 [주식회사 더콘텐츠온] 전환사채 인수계약서(이하 “본 계약(서)”)를 체결한다.

1. 투자자: 에스비아이-성장사다리 코넥스 활성화펀드 제2호(이하 “투자자”)

업무집행조합원:

주식회사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9 NC타워 14층

대표이사 다까하시 요시미

2. 회사: 주식회사 [더콘텐츠온](이하 “회사”)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벨리24 동관 601호

대표이사 김 상 윤

3. 이해관계인(이하 “이해관계인”):

이름: [김 상 윤]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120, 105동 1208호(일원동,샘터마을)

주민등록번호: 631105-1237617

다 음

**제1장  사채의 인수에 관한 사항**

**제1조 사채의 발행과 인수**

1. 회사는 본 계약에 따라 다음과 같은 기명식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이하 “본건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투자자는 본 계약에 정하여진 조건에 따라 이를 인수한다.
   1. 회사의 상호: 주식회사 더콘텐츠온
   2. 본건 전환사채의 명칭: 제[4]회 무보증 사모 전환사채
   3. 본건 전환사채의 종류: 기명식 전환사채
   4. 본건 전환사채의 권면총액: 금 일십억원정(\ 1,000,000,000)
   5. 본건 전환사채의 권면금액 및 권종수: 금 오억원권 2매
   6.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가액: 사채의 권면금액의 100%
   7. 본건 전환사채의 이율: 표면이율 연 [1]%, 만기보장수익률 연복리 [5]%
   8.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 2018년 1월 30일
   9. 본건 전환사채의 만기일: 2022년 1월 29일
   10. 투자자의 본건 전환사채 인수금액

|  |  |  |
| --- | --- | --- |
| 투자자명 | 배정할 전환사채 총액 | 권면금액 및 권종수 |
| 에스비아이-성장사다리 코넥스 활성화펀드 제2호 | \500,000,000 | 금 오억원권 1매 |
| **합계** | **\500,000,000** | **금 오억원권 1매** |

* 1. 본건 전환사채의 원리금 지급장소: 투자자가 지정하는 상환 수탁기관의 계좌
  2. 본건 전환사채의 분할 및 병합: 본건 전환사채권은 기명식으로만 발행하고 그 권면의 매수가 50매 미만이어야 하며, 본건 전환사채권은 발행일로부터 1년 동안은 권면분할이 금지되나 그 이후에는 권면 분할이 허용되고 그 특약이 권면에 기재되어야 하며, 발행일로부터 1년 동안 본건 전환사채권의 병합은 인정하지 아니한다.
  3. 투자자의 조기상환청구권: 투자자는 회사에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2]년이 되는 날로부터 만기일 전일까지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에 해당하는 금액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하여 만기 전 조기상환을 청구할 수 있다. 다만, 조기상환의 청구기간은 조기상환일 전 60일 이후 30일 이전의 기간으로 하고, 조기상환수익률은 연복리 [5]%로 한다.

1. 회사는 납입기일로부터 3영업일 전까지 투자자에게 본건 전환사채 인수대금의 납입을 위한 은행의 별단예금 계좌를 통지하여야 하고, 투자자는 납입기일까지 본건 전환사채 인수대금 전액을 회사가 통지하는 은행의 별단예금 계좌에 송금하여야 한다.
2. 회사는 발행일에 본건 전환사채를 발행하고 전환사채의 상업등기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회사는 발행일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1. 본건 전환사채 사채권. 단, 사채권 발행 교부 전까지 사채권은 사채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사채권 미발행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2. 본건 전환사채의 인수대금 납입영수증
   3. 기타 본 계약상의 전환사채 발행을 적법, 유효하게 하는 것으로서 투자자가 요청하는 자료

**제2조 투자의 선행조건**

본 계약은 전환사채 인수대금의 납입기일 현재 다음 각호의 조건이 충족되는 것을 그 이행 및 효력발생의 선행조건으로 한다.

1.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에 따라 이행하여야 할 의무이행 하였을 것
2.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에서 행한 진술과 보장이 진실되고 정확할 것
3. 본 계약에 따라 투자자가 인수하기로 예정된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하는 등 본 계약의 이행을 방해하는 소송 또는 기타의 절차(행정절차, 감사 등 포함)가 진행 중이거나 진행될 우려가 없을 것
4. 회사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정부의 인허가 등을 획득하였을 것
5. 회사가 본 계약의 이행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3자의 동의 등을 획득하였을 것
6. 회사가 본 계약의 체결 이후 재무상황의 부정적 변동 또는 경영상태에 변동이 없을 것

**제3조 진술과 보장**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 체결일로부터 거래완결일까지 각자 별지1의 진술과 보장 사항이 진실되고 정확함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4조 거래완결 전 의무**

1. 회사는 본건 전환사채를 발행하는데 필요한 모든 절차(정관 및 내부규칙 변경, 주주총회결의, 이사회결의 등 포함)를 이행한다.
2. 회사는 자본구조, 경영상태, 재무상황 등에 통상적이지 않은 변동을 일으키는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하며, 또한 통상적인 영업활동에서 벗어난 일체의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다만, 투자자의 사전 동의를 얻거나 본 계약의 목적을 달성하는데 필요한 행위는 예외로 한다.
3.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제3조에서 정한 진술 및 보장 사항에 변동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지 아니한다.

**제5조 거래완결 전 해제**

1. 본 계약은 다음 각 호에서 정한 경우에 거래 완결 전에 귀책사유 없는 당사자에 의하여 해제될 수 있다.
   * 1. 당사자들이 상호 합의하는 경우
     2. 일방 당사자가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하고(진술과 보장 위반 포함) 상대방의 통보를 받은 후 5일 이내에 이를 치유하지 아니하는 경우
     3. 선행조건 불충족 기타의 사유로 거래완결이 본 계약 체결 후 10영업일 이후까지 이루어 지지 아니하는 경우(및 선행조건이 충족될 수 없는 것이 확실해 진 경우)
2. 본 조에 의한 계약 해제 시 귀책사유 있는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그로 인한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제6조 면책**

제3조에서 정한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의 진술 및 보장이 허위이거나 부정확한 경우 또는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제4조에서 정한 사항을 포함하여 본 계약에 따라 이행되어야 할 의무를 위반하거나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그로 인하여 투자자가 입은 모든 손해와 손실(재무실사 비용, 소송비용, 변호사비용 포함)로부터 그러한 손해와 손실이 없었던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투자자를 면책시켜야 한다(투자자가 입은 모든 손해와 손실에 대한 배상 및 보상을 포함하되, 그에 한정되지 아니한다). 본 조에 따른 면책과 관련하여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각각이 부담하는 의무에 대하여 연대보증책임을 부담한다.

**제7조 거래의 완결**

1. 투자자는 2018년 [1]월 [30]일 또는 당사자들이 달리 합의하는 날에 제2조 소정의 선행조건의 충족을 조건으로 하여 인수대금 전액을 회사가 지정하는 은행지점의 별단계좌에 납입한다. 인수대금 전액이 위 별단계좌에 납입된 때 거래가 완결된 것으로 보고, 이 날을 본 계약에서 ‘거래완결일’이라 한다.
2. 회사는 거래완결일에, 본 조 제1항에 따른 거래가 완결되는 것을 조건으로, 본건 전환사채 전부에 대한 사채권을 발행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하여야 한다. 단, 사채권 발행 교부 전까지 사채권은 사채납입보관증명서 또는 사채권 미발행확인서로 대체할 수 있다.
3. 거래완결일로부터 1주일 이내에 회사는 본건 전환사채와 관련된 상업등기 등 제반 절차를 완료하고, 법인등기부등본, 기타 본 계약서상의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과 인수를 적법, 유효하게 하는 것으로서 투자자가 요청하는 자료를 투자자에게 교부한다.

**제2장 전환사채의 내용**

**제 8조 사채 상환에 관한 사항**

1. 회사는 본건 전환사채 원금 및 이자지급을 다음 각항과 같이 이행하기로 한다.
2. 원금상환

전환권을 행사하지 않은 본건 전환사채 액면금액에 대하여는 원금에 만기보장수익률과 표면이율과의 차이를 본건 전환사채 발행일로부터 만기일까지의 기간 동안 복리(복리이자 산정기간 [12]개월)로 계산한 금액과 합산한 금액을 만기일에 일시 상환하기로 한다.

1. 이자지급

이자의 지급은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일로부터 원금 상환기일까지 미상환잔액에 대하여 별지2의 상환계획에 따라 년 [4]회 지급한다. 다만, 이자지급기일이 은행의 휴무일인 경우에는 그 직후 영업일로 한다.

1.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에 원리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때에는 당해 원금상환기일 또는 이자지급기일 익일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당해 지체 금액에 대하여 연리 [20]%의 이율에 의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하여야 한다.

**제9조 전환권에 관한 사항**

1. 전환청구기간: 투자자는 그 발행일 익일로부터 만기 직전일까지 언제든지 본건 전환사채를 회사의 보통주로 전환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전환방법은 다음과 같다.
   1. 투자자는 본건 전환사채를 보통주식으로 전환하기 위하여, 전환사채 전환청구서에 전환하고자 하는 사채의 범위, 청구연월일을 기재하여 기명 또는 서명날인하고 사채권을 첨부하여 회사에 제출한다.
   2. 전환청구를 한 경우 전환은, 투자자가 전환될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을 제출한 날짜의 영업시간 종료 직전에 효력이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3. 투자자가 전환에 의하여 보통주식을 부여받게 되는 경우 상기 제2호의 날짜를 기준으로 주주명부상의 주주로 간주된다.
   4. 회사는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권을 인도받은 후, 가능한 한 신속하게 투자자에게 그가 부여받을 권리가 있는 수만큼의 보통주식에 대한 주권을 발행하여 인도하여야 한다.
   5. 전환과 관련된 절차의 진행 등 모든 사항은 회사가 담당하고 이를 진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과 결과를 투자자에게 신속히 통보하도록 한다. 또한 변경된 내용은 사채원부에 기입한다.
   6. 회사는 투자자가 주식으로 전환을 청구한 때에는 발행일로부터 전환청구일 까지의 기간 동안 이자를 지급하기로 하고, 전환에 의하여 발행된 주식의 배당기산일은 전환을 청구한 때가 속하는 사업연도의 직전 영업년도말에 발행된 것으로 한다.
3. 전환비율과 전환가격은 다음과 같다.
4. 본건 전환사채의 보통주로의 전환비율은 본건 전환사채 권면금액의 100%로 하고, 전환가격은 회사 보통주식 1주(액면금액 [500]원)당 사채 금액 [4,500]원으로 한다. 1주 미만의 단수주에 해당하는 금액은 전환주권 교부시 현금으로 지급하며, 단수주 대금의 해당기간 이자는 지급하지 아니한다. 단, 본건 전환사채 권면금액의 일부에 대한 전환은 청구할 수 없다.
5. (본 호 삭제)
6. (본 호 삭제)
7. 회사가 유가증권시장이나 코스닥시장에 상장된 기업과의 합병, 주식교환 등을 통해 상장을 위한 심사나 공모주청약 등의 절차를 밟지 않고 곧바로 상장되는 등의 이른바 ‘우회상장’을 하게 되는 경우에는 먼저 아래 5호 내지 8호의 규정에 따라 전환가격을 조정한 후 그 전환가격과, 형식적으로 상장의 효과가 발생한 날을 기준으로 전환 시 발행될 주식과 동일한 종류의 구주의 거래량으로 가중산술평균한 최근 1개월 평균종가, 1주일 평균종가, 최근일 종가를 산술평균한 가격을 비교하여 둘 중 낮은 가격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8. 회사가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 전에 그 당시의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을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유상증자 또는 주식관련사채(전환사채, 신주인수권부사채 및 기타 주식으로 전환될 수 있는 종류의 사채)를 발행할 경우에는 전환가격은 그 하회하는 발행가격으로 조정한다.
9. 본건 전환사채의 발행 이후 주식배당, 무상증자 등으로 인해 발행주식수가 증가하는 경우.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가격은 아래의 수식에 따라 조정한다.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 조정후 전환가격 | = | 조정전 전환가격 | × | { | 기발행  주식수 | + | [ | 신발행  주식수 | × | 1주당 발행가액 | ] | } |
| 시가 |
| 기발행 주식수 | | | | + | 신발행 주식수 | |

(위 산식에서 "기발행주식수"는 전환가격 조정사유 발생일의 직전일 현재 주식수로 하며, 조정 후 전환가격의 원단위 미만은 절사하며, "시가"는 "회사"의 주식이 상장되기 전까지는 2호, 5호, 7호, 8호의 규정에 의한 "전환가격"으로 하되, 상장된 이후에는 당해 발행가액 산정의 기준이 되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및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에 따른 이론 권리락주가 (유상증자 시) 또는 조정사유 발생 전일을 기산일로 하여 계산한 기준주가를 말한다)

1. 합병, 주식분할 및 병합 등에 의하여 전환가격의 조정이 필요한 경우에는 당해 합병 또는 주식의 분할 및 병합 직전에 전환사채가 전액 주식으로 전환되었더라면 전환사채권자가 가질 수 있었던 주식수를 그 가치 또는 그 이상으로 보장하는 방법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2. 조정 후 전환가격이 주식의 액면가 미만으로 되는 경우, 관련 법규를 위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회사는 주총결의 및 법원의 인가 등 액면가 미만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여 신주를 발행할 수 있도록 모든 절차를 취하여야 하며, 액면가 미만으로 전환가액을 조정하는 것이 관련 법규를 위반하는 경우 조정 후 전환가액은 액면가격으로 한다. 단, 전환가격을 액면가격으로 하는 경우, 추후 관련법규의 변경으로 액면가격 미만으로 전환가격을 조정하는 것이 가능할 경우 전환가격을 조정한다.
3. 미발행 수권주식의 유보: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청구기간 만료시까지 회사가 발행할 수권주식의 총수에 본건 전환사채의 전환으로 발행 가능한 주식수를 유보한다.
4. 전환청구에 의한 증자 등기: 회사는 전환청구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부터 2주 이내에 상법에 의한 증자 등기를 행한다.
5. 기타: 전환사채의 발행, 전환의 청구, 기타 전환에 관한 사항은 상법 제513조 내지 제516조의 규정을 따른다.

**제10조 사채증권에 관한 사항**

1. 회사는 본건 전환사채의 사채증권을 발행하여 투자자가 납입하는 인수대금과 교환하여 투자자에게 교부한다.
2. 전호의 규정에 의하여 발행된 증권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다.
3. 사채증권 표시
4. 사채발행 조건의 사항
5. 투자자 소유 회사 발행의 사채증권 또는 주권이 그 동일성을 식별하기 곤란하게 오염 또는 훼손된 경우, 투자자가 그 사채증권 또는 주권의 종류, 번호와 오염 훼손된 사유를 기재하여 서면으로 회사에게 제출하고 새 사채증권 또는 주권의 교부를 청구하면, 회사는 이의 없이 재교부하여야 한다.
6. 투자자 소유 회사 발행의 사채증권 또는 주권을 도난, 멸실 또는 분실한 경우 투자자가 공시 최고 절차에 의한 제권판결을 받은 후 판결서 등본을 제출하고 재발행을 청구하면, 회사는 이의 없이 재교부하여야 한다.

**제11조 전환사채 원부작성 비치 및 열람**

회사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전환사채원부를 작성 비치하고 투자자의 열람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에 응한다.

1. 사채권자의 성명과 주소
2. 사채의 번호
3. 사채의 총액
4. 각 사채의 금액
5. 사채의 이자율
6. 사채의 상환과 이자지급의 방법 및 기한
7. 각 사채의 납입금액과 납입년월일
8. 사채권의 발행년월일
9. 각 사채의 취득년월일
10. 전환가격의 조정 내역 (전환가격 조정 발생 시)

**제3장  거래완결 후 회사 경영에 관한 사항**

**제12조 투자금의 용도 및 제한**

* + 1. 회사는 본 계약에 의하여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별지3 투자금 사용용도의 기재와 같이 사용하여야 하며 회사는 투자 대금의 용도를 변경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2. 회사는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는 본 건 투자금을 제3자에 대한 자금대여 또는 제3자의 주식 매수를 위하여 사용할 수 없다.
    3. 회사는 본 건 투자금을 관리하는 별도의 계좌를 개설하여야 하고, 매분기별 본 계좌의 거래조회 내역을 매분기 종료 10일이내에 투자자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4. 회사는 투자자의 요청이 있는 경우 투자자가 지명하는 회계감사인으로부터 본 건 투자금 납입일로부터 1년이 경과한 날 또는 본 건 투자금의 소진을 완료한 날 중 먼저 도래하는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투자금액 사용처 실사를 받아야 한다.

**제13조 기술의 이전, 양도, 겸업 및 신회사 설립 제한**

1. 회사는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현재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기술 또는 개발중이거나 개발계획이 확정(외부기관에 의뢰하여 개발하는 경우도 포함, 이하 같음)되었거나 도입 예정인 영업비밀(Know-how), 정보, 기술 등 유·무형의 재산적 가치가 있는 자산을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이전 또는 양도할 수 없다.
2.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현재 회사가 보유하고 있는 기술, 개발중이거나 도입하는 기술의 일부 또는 전부와 관련된 신회사를 설립하거나 개인사업을 할 수 없으며, 경쟁업종 종사, 경쟁사 주식취득 또는 회사가 경영하는 사업에 직간접적으로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사업에 법적으로나 실질적으로 경영진, 기술고문 및 직원으로 참여하는 등의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행위를 할 수 없다. 본 항에서 정한 이해관계인의 의무는 이해관계인이 회사의 지분을 유지하고 있는 기간은 물론이고 이해관계인이 지분을 처분한 이후에도 투자자가 회사의 주주로 남아있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이 지분 전체를 처분하여 회사에 더 이상 지분을 유지하고 있지 않게 된 시점부터 [1]년간 유효하다.

**제14조 임원의 지명**

1. 투자자는 회사의 “상무에 종사하지 아니하는 이사(비상근이사)” [1]인을 지명할 권리를 가지며, 투자자가 지명한 이사(‘투자자 지명이사’라 함)는 회사가 이사회를 개최하는 경우 언제든지 당해 이사회에 참석할 수 있고, 회사는 투자자 지명이사가 이사회에 참여할 수 있도록 이사회 개최시 투자자 및 투자자 지명이사에게 이사회 안건 및 개최 일시, 장소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2. 투자자는 언제든지 투자자 지명이사의 교체를 요구할 수 있으며 회사와 이해관계인은 이에 응하여 투자자 지명이사의 교체를 위한 임시주주총회의 개최 등의 필요한 절차를 이행하여야 한다.
3. 투자자 지명이사는 회사의 채무에 대한 보증을 하지 아니하며, 투자자 지명이사 본인의 고의 또는 중과실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발생한 손해에 대하여 회사 및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책임을 면제받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투자자 지명이사가 업무수행과 관련하여 고의 또는 중과실이 없이 제3자에게 부담, 지급하게 되는 비용을 투자자 지명이사에게 보전해 준다.
4. 회사는 본 계약 체결일 현재 회사의 임원에 대한 것과 동일한 수준으로 투자자 지명이사에 대해 임원책임보험을 부보하도록 한다.

**제15조 경영사항에 대한 동의권 및 협의권**

1.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투자자에게 각 사항의 시행일로부터 2주전까지 서면으로 통지한 뒤 각 사항의 시행일의 전일까지 투자자로부터 서면동의를 얻어야 한다.
2. 정관의 변경
3. 신주 발행(유무상증자), 주식관련사채, 옵션 등의 발행 또는 부여
4. 해산, 청산, 합병, 분할, 분할합병, 주식의 포괄적 교환 또는 이전, 영업의 양도, 영업의 양수, 타회사의 인수, 경영임대차, 위탁경영 기타 회사조직의 근본적인 변경
5. 건당 전년도 감사보고서상 자산총계의 [10]% 이상 또는 연간 누계액 기준 전년도 감사보고서상 자산총계의 [20]% 이상의 소유자산을 구매, 매각, 대체, 처분 등을 하는 행위
6. 건당 전년도 감사보고서상 자산총계의 [10]% 이상 또는 연간 누계액 기준 전년도 감사보고서상 자산총계의 [20]% 이상의 제3자에 대한 투자(주식 및 사채인수 포함), 자금대여, 담보 제공, 보증 등
7. 건당 전년도 감사보고서상 자산총계 [10]% 이상의 회사의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
8. 본건 투자 당시 사업계획에 명시한 것과 현저히 다른 사업에 착수하거나, 주요사업의 중단, 포기
9. 건당 전년도 감사보고서상 자산총계의 [10]% 이상 또는 연간 누계액 기준 전년도 감사보고서상 자산총계의 [20]% 이상의 신규 자금차입 또는 채무의 부담
10. 계열회사(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상 계열회사의 범위에 포함되는 회사를 말한다), 임직원, 주주, 그 특수관계인(자본시장 및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상의 특수관계인의 범위에 해당하는 자를 말한다)과의 거래
11. 현금, 주식 또는 기타 회사의 재산으로 이루어지는 배당의 의결 또는 지급
12.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임직원에 대한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13. 외부감사인의 선임 및 변경
14. 대표이사의 선임 및 해임

② 회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관하여 투자자와 사전에 협의하고 투자자에게 업무처리에 따른 결과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1. 주주총회의 안건 및 이사회의 안건
2. 주식보유상황의 변동에 관한 사항, 단, 제3자의 주식보유상황의 변동은 사후 통지만 한다.
3. 임직원에 지급하는 Profit Sharing의 비율 변경
4. 회사의 기업공개(IPO)의 시기, 상장주식시장, 상장주식의 수 및 공모가격의 결정, 우회상장의 조건 및 방법

**제16조 보고 및 자료 제출**

1. 회사는 투자자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이 발생했을 경우에는 사유발생일로부터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한다. 단, 본 계약의 다른 약정에 의한 통지의무와 중복되는 항목에 있어서는 어느 경우든 먼저 도래하는 기일까지 통지 또는 보고되어야 한다.
2. 재해로 인하여 막대한 손해를 입은 때
3. 회사가 발행, 배서 또는 보증한 어음 또는 수표가 부도로 되거나 은행과의 거래가 정지된 때
4. 파산, 회생절차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의 개시의 신청이 있거나 부실징후기업으로 인정되는 때
5. 중대한 영향을 미칠 소송이 제기된 때
6. 중요손해의 발생
7. 정부 및 준정부기관에 의한 행정적 제재
8. 제15조 제1항 7호의 동의사항에 이르지 아니할 정도의 사업계획의 변경
9. 주요주주의 변동
10. 회사의 사업에 필요한 중요 기술인력의 채용 및 퇴직 상황
11. 제15조에 정한 협의 및 동의사항이 발생한 때
12. 기타 상기에 준하는 것으로서 투자자가 중요하다고 인정하여 회사와 서면으로 요청한 사항
13. 회사는 투자자의 별도 요청이 없더라도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정해진 기일 내에 제출하여야 한다.
14. 연차보고 - 다음 회계연도 시작일로부터 90일 이내
    * 1. 회계법인의 감사를 받은 결산 재무제표
      2. 연간경영보고서
15. 분기보고 - 다음 분기 시작일로부터 30일 이내
16. 분기 재무제표
17. 분기경영보고서
18. 기타보고 – 투자자가 정하는 기일내[원칙적으로 가)의 경우 매 회계연도 종료 1개월전까지, 다)의 경우 즉시 보고하여야 하나 투자자가 그 보다 단기간 내에 보고를 요청하는 경우 그에 응하여야 한다]
19. 부가가치세 신고서
20. 금융기관 거래상황 확인서
21. 기타 상기에 준하는 것으로서 투자자가 요청하는 사항
22. 회사는 투자자가 요청하는 경영자료를 투자자가 요청하는 양식에 따라 투자자에게 제공하기로 한다.

**제17조 증자 참여의 우선권에 관한 사항**

회사가 유상증자 등의 방식을 통하여 지분증권(여기서 ‘지분증권’이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제4조 제4항 소정의 ‘지분증권’을 의미한다. 다만, 동 신규증권에는 (a) 임직원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 및 (b) 다른 회사와의 합병 등으로 인하여 발행되는 주식은 포함되지 아니한다)을 발행하는 경우, 투자자는 당해 지분증권 발행 결의일 전일을 기준으로 산정한 회사의 의결권 있는 주식 총수 대비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본건 전환사채가 의결권 있는 주식으로 미전환한 수량과 신규증권 발행 결의 이전 주식으로 전환한 주식의 수량을 합산한 주식의 수에 따른 지분비율에 따라 신규증권을 다른 제3자보다 우선하여 이를 인수하거나 매입할 권리를 보유한다.

**제18조 기업공개(IPO) 의무**

회사는 가능한 이른 시간 내에 자신의 주권을 공개시장에 상장 또는 등록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이와 더불어 다른 법인으로부터의 인수∙합병의 제의가 있는 경우 투자자와 협의하여 인수∙합병의 협의에 최대한의 성실한 자세로 임하여야 한다. 회사의 공개가 성숙단계에 이르렀다고 판단됨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특별한 이유없이 기업공개를 미루는 경우 투자자는 구체적인 근거를 제시하여 기업공개를 서면으로 요구할 수 있다.

**제19조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회사는 회사 경영 및 기술개발 등 사업 전반에 기여하였거나, 기여할 능력을 갖춘 임직원에 대해, 본건 거래완결일 전 이미 부여되었거나 발행된 것과 제15조 제1항 11호에 따라 투자자의 동의하에 발행된 것을 포함하여 그 행사로 인해 발행될 수 있는 주식 지분율 총계가 주식매수선택권 부여시점의 발행주식총수의 [10]% 이내인 범위 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수 있다. 이 경우에 신주발행교부에 의한 방식으로 한다.

**제20조 이사회 및 주주총회 등 (본 조 삭제)**

**제21조 회계 및 업무감사; 시정조치**

1. 회사는 [2018] 회계연도부터 IPO를 위한 제반 준비절차로 투자자의 서면동의를 받은 회계법인을 외부감사인으로 지정하여 외부감사를 받아야 한다.
2. 투자자는 회사의 경영 및 재산 상태를 확인하고 계획된 사업의 수행에 대해 투자자의 입장에서 선의의 관리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경우 자신의 직원 또는 외부의 전문가를 파견하여 회사의 회계 및 업무 전반에 관한 조사 및 기타 투자자가 필요하다고 판단하는 업무를 수행하게 할 수 있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이에 대하여 성실히 협조하여야 한다.
3. 경영상의 조사에 소요되는 비용은 회사가 부담한다.
4. 투자자는 회사의 경영에 대한 외부감사인의 감사 결과 또는 투자자의 조사 결과에 따라 회사에 일정한 기간을 정하여 그 시정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회사는 시정을 요구받은 사항에 대해 정하여진 일정한 기간 내에 시정 조치를 이행하고 그 결과를 투자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4장  거래완결 후 지분의 처분에 관한 사항**

**제22조 투자자의 지분 처분**

투자자는 본건 전환사채를 포함하여 거래완결 이후 투자자가 취득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이하 상환되지 않은 전환사채와 전환권을 행사하여 회사로부터 인수받은 주식을 모두 가리켜 “지분”이라고 한다)을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회사는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지분 처분에 따른 권리이전에 필요한 절차를 즉시 이행하여야 한다.

**제23조 이해관계인의 주식 처분**

1.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에서 달리 정하고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있으면 그 소유의 회사 발행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유로이 처분할 수 있다. 단,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가 없으면 본 조, 제24조(투자자의 우선매수권) 및 제25조(투자자의 공동매도권 등)에서 정하는 제한 하에서만 그 소유의 회사 발행 주식의 전부 또는 일부를 제3자에게 양도, 이전, 매각, 담보제공 기타 일체의 처분을 할 수 있다.
2. 본 조에 따라 이해관계인이 투자자의 사전 서면동의를 받고 주식을 제3자에게 처분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주식을 양수하는 제3자로 하여금 본 계약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도록 하여야 한다.

**제24조 투자자의 우선매수권**

1. 이해관계인이 자신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하는 경우, 당해 이해관계인은 양도하고자 하는 주식을 제3자에게 매각, 양도 또는 이전하고자 한다는 요지의 취지, 당해 제3자의 신원, 양도주식수, 주당 양도가격, 양도 예정일 기타 양도의 주요 조건(이하 “매각조건”)을 명시하여, 양도예정일로부터 [30]일 이전에 투자자에게 서면 통지하고, 투자자의 동의 여부를 물어야 한다.
2. 투자자는 이해관계인으로부터 위 통지를 수령한 후 [30]일 이내에 통지된 거래에 대하여 동의 여부를 표시하여 이해관계인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만약 투자자가 위 기간 내에 이해관계인에 통지를 하지 않은 경우에는 투자자가 위 통지된 거래에 대해 거절한 것으로 본다. 단, 투자자는 거절 또는 동의의 의사표시 대신에, 매수 청약된 주식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직접 또는 투자자의 특수관계인(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와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가 법률상 혹은 사실상 업무집행 또는 운용하는 모든 펀드를 포함한다)을 통하여 매수할 의사를 통지할 수 있고, 투자자가 이해관계인에게 상기 매수의사를 통지한 경우 위 통지일에 투자자와 이해관계인 간에 위 통지된 조건으로 해당 주식에 관한 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본다(한편, 투자자 및 투자자의 특수관계인 이외의 자를 통하여 매수하는 경우에는 회사의 동의를 얻은 시점에 거래가 체결된 것으로 본다). 이 경우 투자자는 통지일로부터 [30]일 이내에 매수금액이 전액 현금 또는 계좌이체로 해당 이해관계인에게 지급되도록 하여야 한다.
3. 투자자가 제1항의 통지를 수령한 후 위 거래에 동의하거나, 위 [30]일의 기간 내에 위 주식에 대한 우선매수권을 행사하지 않는 경우에는 이해관계인은 위와 같이 양도 통지된 모든 주식을 제3자에게 다음의 조건으로 매각할 수 있다.
   1. 양도되는 주식수는 제1항에서 매수 청약된 주식수와 일치하여야 한다.
   2. 주당 가격은 제1항에서 매수 청약된 주식의 가격을 하회하지 않아야 한다.
   3. 매도의 기타 조건은 제1항에 의해 통지된 매각조건보다 매수인에게 더 유리하여서는 아니 된다.
   4. 해당주식을 매수하는 매수인은 본 계약에 따른 이해관계인의 권리의무 일체를 승계하여야 하고, 이해관계인은 이를 확인하는 서면을 당해 매수인으로부터 징구하여 투자자에게 이를 교부하여야 한다.
4. 제3항에서 [30]일 이내에 제3자에게 주식이 위와 같이 매각되지 않을 경우, 이해관계인은 제1항 내지 제3항에 규정된 절차를 다시 이행하여야 한다. 또한, 이해관계인이 제3항 각 호의 조건에 위반하여 보유 주식을 매각한 경우 그 차액[ (처분주식수 X (매각조건 기재 주당 가격 – 실제 처분한 주당 가격) ]의 [1.5]배에 해당하는 금원을 투자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25조 투자자의 공동매도권**

1. 이해관계인이 제23조(이해관계인의 주식처분) 및 제24조(투자자의 우선매수권)에 따라 주식을 처분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는 우선매수권을 행사하는 대신 이해관계인과 동일한 조건으로(단, 전환사채가 공동매도권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해당 전환사채가 전환된 경우의 주식수를 기준으로 가격을 산정함)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의 공동 처분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진다. 투자자가 본 조에 의한 공동매도권을 행사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는 제24조 제1항의 서면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해관계인에게 공동매도권 행사 여부, 공동매도권을 행사하기로 선택한 경우 공동 매도하고자 하는 지분의 종류와 수량을 서면으로 통지해야 한다. 이해관계인은 투자자가 지분의 공동 매도를 요청하는 경우 공동매도의 실행을 위해 필요한 조치를 다하여야 한다.
2. 투자자가 본 조에 따른 공동매도권을 행사하는 경우, 지분양수예정자가 이해관계인 및 투자자로부터 이해관계인과 투자자의 지분 비율에 따라 지분을 양수하지 않는 한, 이해관계인은 보유 주식을 처분할 수 없다.
3. 제24조 제3항(투자자의 우선매수권)은 본조의 경우에도 적용한다. 단, 제24조 제3항 제4호는 투자자가 본 조에 따른 공동매도권을 행사한 후에도 회사 발행 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 한하여 적용된다.

**제26조 자산의 우선매수권**

1. 회사가 주요자산의 전부 또는 자산총액의 [20]% 이상에 해당하는 자산을 매각 또는 양도하고자 하는 경우, 투자자 또는 투자자가 지명한 제3자(이하 “투자자 등”으로 총칭함)는 회사가 매각하고자 하는 주요자산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해 우선매수권을 가진다. 이를 위해 회사는 주요자산의 처분 또는 매각계획을 수립할 경우 지체없이 투자자에게 처분하고자 하는 주요자산의 내역, 처분가격 및 조건과 양수예정자 등 상세한 예정처분내역을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투자자 등은 위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매수의사를 회사에 서면통지하여야 한다. 투자자 등의 매수통지의사가 회사에 도달하는 경우 투자자 등과 회사 사이에서 대상 자산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며, 투자자 등과 회사는 이로부터 10일 이내에 자산양수도계약을 이행하여야 한다. 투자자가 회사의 서면통지에 대하여 매수거절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위 서면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처분에 대한 부동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별도의 의사를 표시하지 아니한 경우, 회사는 대상 자산을 투자자 등 이외의 자에게 처분할 수 있다.
2. 제1항에 따라 자산을 투자자 등 이외의 자에게 매각하는 경우, 회사는 자산을 처분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 이내에 제1항의 서면통지에 기재된 것 이상의 가격 및 조건으로 자산을 처분할 수 있다. 서면통지에 기재된 것보다 낮은 가격 또는 제3자에게 유리한 조건으로 대상 자산을 처분하고자 하거나 처분할 수 있는 날로부터 60일을 넘기는 경우는 다시 제1항에 따른 절차를 거쳐야 한다. 그와 같은 절차를 거치지 않고 제1항의 서면통지에 기재된 것보다 낮은 가격으로 제3자에게 대상 자산을 처분하는 경우에는 그 차액을 투자자에게 배상하여야 한다.

**제27조 지분매수청구권**

1. 다음 각 호의 사유가 발견되거나 발생하는 경우 투자자는 그 선택으로 회사 및/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투자자가 보유하는 회사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여 줄 것을 요구할 수 있고, 이 경우 회사 및/또는 이해관계인은 이를 매수(본항에서 매수는 상환 또는 유상감자를 포함한다)하여야 한다.
2. 본건 전환사채의 원금 또는 이자 지급이 그 지급기일에 이루어지지 아니한 경우
3. 제3조의 진술과 보장이 허위 또는 부정확하였다는 것이 사후적으로 밝혀진 경우
4. 투자금을 별지2 투자금 사용용도에서 규정한 사용용도 외로 사용한 경우
5.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에서 정한 의무를 위반한 경우 (본 계약에서 정한 거래완결 전 의무를 위반하였던 것이 사후적으로 발견된 경우 포함)
6. 회사 또는 이해관계인이 거래완결 후 상법 또는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등의 제반 법규를 위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이행할 수 없는 경우
7. 주금의 가장납입 등 명목여하를 불문하고 회사가 중요자산을 사업목적 외의 용도에 사용하거나 유출시킨 경우
8. 회사의 중요자산에 대해 압류, 가압류, 가처분 또는 경매의 신청이 있는 경우
9. 회사에 대한 해산, 청산, 파산, 회생 또는 이에 준하는 절차(워크아웃 등)의 개시신청이 있거나 개시되는 경우
10. 은행거래정지 등의 부실징후기업으로의 인정 등의 절차가 개시되는 경우
11. 회사가 3개월 이상 계속하여 영업을 하지 아니하는 경우
12. 회사와 이해관계인 또는 제3자와의 분쟁 등으로 회사의 사업추진이 불가능할 경우
13. 본 조 제1항에 의한 지분매수요구는 회사 및/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매수대상 지분의 가격 및 수량을 기재한 서면으로 하며, 회사 및/또는 이해관계인에 매수요구서가 도달한 시점에 당해 지분에 대한 매매계약이 체결된 것으로 보고, 그로부터 [30]일 또는 투자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회사 및/또는 이해관계인은 지분매매계약에 따른 대금지급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14. 본 조 제1항에 의한 지분매수에 있어서 매매가격은 투자자가 투자한 원금과 이에 대하여 거래완결일로부터 본 조 제2항에 의한 매매 이행일까지 연리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으로 하되, 기 지급된 배당금은 차감하여 계산하기로 한다.
15. 본 조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회사가 투자자로부터 제18조의 서면 요구를 받고 1개월 이내에 기업공개를 위한 주간사 선정 등의 구체적인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면 투자자는 자신의 선택에 따라 자신이 가지고 있는 회사 지분의 본질가치를 평가하여 동 가치의 [200]%의 가격으로 회사 및/또는 이해관계인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단, 여기서 ‘본질가치’라 함은 증권의 발행 및 공시 등에 관한 규정 시행세칙 제5조 내지 제8조의 분석기준에 의하여 평가된 지분의 가치를 말하고, 본질가치의 산정은 투자자가 지정하는 회계법인 및 국내 상위 5개 회계법인 중 하나에 의하여 산출된 2가지 평가 액수의 산술평균으로 한다.
16. 본 조에 의한 지분매수요구는 투자자의 회사 및/또는 이해관계인에 대한 손해배상 청구를 방해하지 아니한다.
17. 본 조에 의한 투자자의 지분매수청구가 행사될 경우 회사 및/또는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를 얻어 제3자를 지정하여 투자자 소유 지분의 전부 또는 일부를 매수하게 할 수 있다.
18. 이해관계인은 회사가 본 조에서 정한 투자자의 지분매수청구권 행사에 따른 회사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그 불이행 부분에 대하여 회사와 연대하여 투자자에 대하여 의무를 부담한다.
19. 제1항의 각호의 사유(공동매도의무, 동반매각의무 등 이해관계인의 개인적 의무 위반이 발생한 경우는 제외함)가 발생한 경우, 투자자는 회사에게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한도에서 제3항의 매수가격으로 회사의 자기주식매수절차 또는 유상감자절차 이행을 청구할 수 있다. 투자자의 회사에 대한 자기주식매수절차 또는 유상감자 절차 이행청구가 있는 경우, 회사는 관련 법령상 요구되는 이사회, 주주총회 개최 등 기타 필요한 일체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 만약 본 조항에 따른 자기주식 매수 또는 유상감자를 위하여 회사의 정관개정 또는 법정준비금 감소 등 사전적 조치가 필요한 경우, 관련법령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각 가능한 빠른 시점에 그러한 조치를 취하여야 한다.
20. 투자자의 제7항의 자기주식매수절차 이행청구권 또는 유상감자절차 이행청구권 행사 시, 이해관계인은 이사회 및 주주총회에서 회사의 자기주식 매수 또는 유상감자를 위한 의결권을 행사하여야 하며, 회사의 자기주식매수절차 또는 유상감자절차가 진행되는 경우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의 소유지분이 투자자가 청구한 매수가격으로 전부 매입이 가능한 한도내에서만 동 절차에 참여한다.
21. 제7항의 회사에 대한 자기주식매수절차 이행청구권 및 유상감자 절차 이행청구권이 제1항의 이해관계인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투자자는 보유주식 매각을 위하여 합리적 재량범위 내에서 이해관계인에 대한 주식매수청구권이나 회사에 대한 자기주식매수절차 이행청구권 또는 유상감자절차 이행 청구권을 선택적으로 또는 동시에 행사할 수 있다.
22. 본조에 규정된 이해관계인에 대한 주식매수청구 및 회사에 대한 자기주식매수절차 이행 청구(유상감자절차 이행청구 포함)는 투자자의 회사에 대한 위약 벌 및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5장  계약의 종료 등**

**제28조 기한 이익의 상실 및 계약의 종료**

1. 본건 거래 완결 후 회사 및 이해관계인에게 제27조 제1항 각 호의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기한의 이익을 상실하고, 투자자는 본건 전환사채의 전부 또는 일부에 대한 기한 전 상환을 회사 및 이해관계인에게 청구할 수 있다.
2. 본건 거래 완결 후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사항을 위반한 경우 투자자는 그 시정을 요구할 수 있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그 시정 요구를 받은 때로부터 7일 이내에 이를 시정하지 않으면 투자자는 본 계약을 해제 또는 해지할 수 있다. 단, 전환청구를 하여 주식을 인수한 부분에 대하여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3. 투자자가 본건 전환사채의 일부 또는 전부에 대하여 전환권을 행사하여 회사의 주식을 인수하는 경우에도 투자자의 본 계약상의 지위는 그대로 유지된다. 단, 본 계약 제3장 및 제4장의 규정은 투자자가 보유하고 있는 지분 중 [90]% 이상을 매각 등의 방식으로 처분한 경우 종료한다.
4. 본 조의 계약 종료는 그 이전에 이미 발생한 권리·의무 및 손해배상청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제29조 투자금 회수 및 손해배상 청구**

1. 전 조 제1항에 따라 기한 이익을 상실하거나 전 조 제2항에 따라 본 계약이 해제 또는 해지되는 경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투자자가 투자한 원금과 이에 대하여 거래완결일로부터 다 갚는 날까지 연리 20%의 비율에 의한 금액을 합산한 금액을 투자자에게 지급하여야 한다.
2. 투자자는 전 조 제1항의 기한 이익의 상실 사유 내지 전 조 제2항의 해제 또는 해지 사유가 발생한 경우라도, 자신의 선택에 따라 계약 관계를 그대로 유지하면서 회사 및 이해관계인에게 (a) 계약 위반에 따른 실손해액에 대한 손해배상을 청구하거나 (b) 투자자가 투자한 원금의 20%에 상당하는 금액을 위약벌로 청구할 수 있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이에 응하여야 한다.
3. 본 조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본 계약 다른 조항에서 정한 권리 행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며, 본 조에 의한 손해배상의 청구는 서면으로 하며 손해배상의무자는 투자자가 지정하는 기한 내에 이를 지급한다.

**제30조 계약의 내용 변경**

1. 당사자는 전원의 서면 합의에 의하여 본 계약의 내용을 변경할 수 있다.
2. 투자자가 서면으로 명확한 의사표시를 하지 아니하거나 본 계약에 달리 정함이 없는 이상, 투자자의 어떠한 행위도 투자자가 본 계약상의 권리를 포기한 것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제31조 권리 및 의무의 양도, 승계**

1.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거래 완결 전후를 불문하고 투자자의 사전 서면 동의 없이 본 계약에 관한 권리 및 의무를 제3자에게 양도하지 못한다.
2. 투자자는 (i) 본 계약에 위배되지 아니한 방법으로 투자자가 보유하는 본건 전환사채 지분의 [30]% 이상에 해당하는 수량만큼 매도한 경우(회사의 IPO 후 시장 매각시 제외) 투자자의 결정 및 통지에 따라 매도하는 본건 전환사채 지분 상의 투자자의 본 계약상 권리는 본건 전환사채 지분 매수인에게도 승계되며, (ii) 투자자가 투자조합인 경우 존속기간만료 등의 이유로 해산되어 투자자의 업무집행조합원 또는 그가 지정하는 자에게 본건 전환사채 지분을 양도하는 경우, 양도하는 본건 전환사채 지분 상의 투자자의 본 계약상 권리는 본건 전환사채 지분 매수인에게 승계된다.
3.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전항의 계약상 지위 승계를 수인하여야 한다.

**제32조 통지**

1. 본 계약에 따른 회사 및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및 서류 송부는 아래의 주소에 인편, 팩스,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한다. 주소가 변경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며, 그 이후 상대방은 변경된 주소로 통지 및 서류 송부를 한다.

1. 회사에 대한 통지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24 동관 601호

전화번호: 02-2183-1934

팩스번호: 02-2183-1939

이메일: raykim@tcokr.com

2. 이해관계인에 대한 통지

주소: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120, 105동 1208호(일원동,샘터마을)

전화번호: 02-2183-1934

팩스번호: 02-2183-1939

이메일: raykim@tcokr.com

1. 본 계약에 따른 투자자에 대한 통지 및 서류 송부는 아래의 주소에 인편, 팩스, 등기우편 또는 전자우편으로 발송한다. 주소가 변경된 경우 해당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이를 지체없이 통지하며, 그 이후 상대방은 변경된 주소로 통지 및 서류 송부를 한다.

1.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주소: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9 NC타워 14층

전화번호: 02-2139-9227

팩스번호: 02-2139-9230

이메일: dwnahm@sbigroup.co.kr

1. 본 계약에서 정한 투자자의 모든 권리를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가 투자자의 업무집행조합원으로서 투자자를 위하여 재판상 및 재판외에서 행사한다.

**제33조 비밀유지**

본 계약과 관련하여 상대방으로부터 제공받은 모든 정보는 다음의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비밀로 하고, 이를 제3자에게 제공하거나 다른 목적으로 사용할 수 없다. 본 조의 의무는 본 계약의 효력이 상실하는 경우에도 [2]년간 그 효력이 존속된다.

1. 당사자가 공개하기로 합의한 사항
2. 공지된 정보
3. 정보를 제공받은 당사자가 제3자로부터 이미 적법하게 취득한 정보
4. 법원 또는 정부기관이 적법하게 공개 또는 제공을 요구한 정보(단, 사전에 상대방 당사자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34조 준거법 및 분쟁해결**

1. 본 계약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규율되고 해석된다.
2. 본 계약에 따라 발생한 모든 분쟁의 제1심 관할법원으로 서울중앙지방법원을 지정한다.

**제35조 이해관계인의 연대책임**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상 회사의 모든 의무를 회사와 연대하여 이행하여야 하며, 회사가 법적 제약으로 인해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에도 그러하다. 이해관계인의 연대책임 및 본 계약상 의무에는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에 따른 의무의 취지에 부합하게 직접 또는 간접적으로 이사회(이사회 내 위원회를 포함함) 및 주주총회에서 의결권을 성실하게 행사하는 것을 포함한다.

**제36조 지연배상금**

본 계약이 관련 규정하에서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에 대한 금전지급의무가 있는 경우,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그 지급기일에 지급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본 계약서에 달리 정함이 없는 한 지급기일 다음날로부터 실제 지급하는 날까지 지급의무금액에 대하여 연리 [20]%의 이율에 의하여 산정한 지연배상금을 지급한다.

**제37조 세금**

이 계약의 당사자에게 부과된 조세 공과금은 법령상 부담하여야 할 당사자가 각자 부담한다.

**제38조 일부 무효**

본 계약 또는 이와 관련하여 작성된 서류에 명시된 한 개 또는 수개의 조항이 법령에 따라 무효, 위법 또는 집행불능으로 되더라도 본 계약에 명시된 나머지 조항의 효력, 적법성 및 집행가능성은 그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는다.

**제39조 기타**

1. 본 계약서의 별지와 첨부서류는 본 계약서와 일체를 이루는 것으로서 그에 따른 내용은 본 계약의 내용의 일부를 구성한다.
2. 본 계약상의 내용이 본 계약 체결 이전의 당사자들 사이의 어떠한 구두 또는 서면에 의한 교섭, 합의 등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본 계약의 내용이 우선한다.
3. 본 계약은 투자자, 회사, 이해관계인의 서명날인과 동시에 그 효력이 발생한다.
4. 본 계약의 체결 사실을 증거하기 위하여 투자자, 회사, 이해관계인은 대표자 또는 대리인으로 하여금 본 계약서의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란에 서명날인하게 하는 방법으로 본 계약을 체결하고, 각 1통의 계약서를 작성하여 이를 보관하기로 한다.

**제6장  특약사항**

**제40조 (특약사항의 효력)**

특약사항은 본 투자약정서의 본문의 내용을 수정ㆍ삭제ㆍ추가하는 사항으로서 본문의 내용이 특약사항의 내용과 상충되는 경우에는 특약사항의 내용이 그 효력에 있어서 우선한다.

**제41조 (특약사항의 구체적 내용)**

1.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본 건 투자금 납입 이후 회사의 코넥스시장 상장을 위해 노력하여야 한다.

**계약 체결일 : 2018. 1. 29.**

투자자 : 에스비아이-성장사다리 코넥스 활성화펀드 제2호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509 NC타워 14층

업무집행조합원 에스비아이인베스트먼트 주식회사

대표이사 다까하시 요시미 (인)

회 사 : 주식회사 더콘텐츠온

주소 : 서울시 강남구 테헤란로 322 한신인터밸리24 동관 601호

대표이사 김 상 윤 (인)

이해관계인 : 김 상 윤 (인)

주소 : 서울시 강남구 일원로 120, 105동1208호(일원동,샘터마을)

주민등록번호 : 631105-1237617

**(별지1)**

**진술과 보장**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및 거래완료일 현재 아래 사항이 진실되고 정확함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1장 공통사항**

* 1.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회사가 대한민국 법률에 따라 적법하게 설립되어 유효하게 존속 중인 주식회사로서 회사에 대하여 파산, 회생 등 도산절차와 관련된 어떠한 신청도 제기된 바 없으며, 지급불능, 지급유예, 워크아웃 절차 등 회사의 주주 및 채권자의 권리에 부정적 영향을 미치는 사실이 없음을 본 계약 체결일 및 거래 완결일을 기준으로 진술하고 보장한다(이하 진술 및 보장 전체에 대한 기준시점은 계약 체결일 및 거래완결일이다).
  2.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을 체결하고 본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는데 필요한 법률적, 사실적인 모든 권한을 가지고 있으며, 주주총회 및 이사회의 승인을 비롯하여 본 계약의 체결 및 유지를 위하여 회사가 이행하여야 하는 모든 조치를 취하였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3. 본 계약의 체결 및 전환산채의 발행은 법률이나 규정 기타 관계법령을 위반하지 아니하며, 회사의 정관에 부합하고, 회사 및 이해관계인이 당사자인 계약 또는 기타 의무의 위반을 가져오지 아니함을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진술하고 보장한다.
  4. 본 계약에 의한 회사 및 이해관계인의 의무는 본 계약에서 정한 바 그대로 적법, 유효하고 구속력이 있으며 회사 및 이해관계인에 대하여 집행 가능한 법적 의무를 구성함을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진술하고 보장한다.
  5. 투자자가 본 계약에 따라 인수하는 전환사채는 적법하며 유효하게 발행될 것이며, 투자자의 본 계약상의 권리 혹은 전환사채에 대한 권리 행사를 실질적으로 방해할만한 행정절차(행정처분, 조사, 감사, 수사 포함), 법령, 또는 보전처분을 포함한 법원의 재판에 의한 어떠한 제한이나 회사와 이해관계인이 당사자이거나 구속을 받는 계약상의 어떠한 제한도 존재하지 아니함을 회사 및 이해관계인은 진술하고 보장한다.

**제2장. 회사에 관한 사항**

1. 자본에 관한 사항
2. 회사의 발행주식은 본 계약의 체결일을 기준으로 주당 액면가가 금 [500]원인 보통주 [2,400,000]주 및 전환상환우선주 [642,858]주이고, 그 이외의 발행 주식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주주별 지분율, 전환사채 발행내역, 신주인수권부사채, 주식매수선택권, 주식배당, 기타 장래 회사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제반 권리의 주요 내용 및 주식매수선택권 부여내역은 아래 주식 등의 현황 기재와 같으며 아래 기재 사항 이외에 회사의 주식 지분율 기타 장래 회사의 지배구조에 영향을 줄 수 있는 어떠한 사항도 없다.
3. 주주별 소유주식수

|  |  |  |  |
| --- | --- | --- | --- |
| 주주명 | 주식수 | 지분율(%) | 기타 (담보권설정여부,  최대주주 및 그 특수관계인 여부) |
| 김상윤 | 1,490,220 | 49.0% |  |
| 에스비아이-성장사다리코넥스활성화펀드 | 357,142 | 11.7% |  |
| 한봉선 | 239,780 | 7.9% | 직계가족 |
| 안종관 | 200,000 | 6.6% |  |
| 김철기 | 100,000 | 4.7% |  |
| 유니온미디어앤콘텐츠투자조합 | 142,858 | 3.3% |  |
| 김이슬 | 90,000 | 3.0% | 직계가족 |
| 김정희 | 90,000 | 3.0% | 직계가족 |
| 김준희 | 90,000 | 3.0% | 직계가족 |
| MAVI 신성장좋은기업투자조합1호 | 71,429 | 2.3% |  |
| MAVI 신성장좋은기업투자조합2호 | 71,429 | 2.3% |  |
| 이진우 | 40,000 | 1.3% |  |
| 이진호 | 40,000 | 1.3% |  |
| 박진철 | 20,000 | 0.7% | 등기이사(부사장) |
| 합 계 | 3,042,858 | 100.0% |  |

1. 전환사채

|  |  |  |  |  |
| --- | --- | --- | --- | --- |
| 회수 | 총 발행가액 | 미 전환금액 | 전환가액 | 전환기간 |
| 1 | 1,250,000,000 원 | 1,250,000,000 원 | 3,500 원 | 2015.08.22~2019.08.19 |
| 2 | 500,000,000 원 | 500,000,000 원 | 3,500 원 | 2016.03.22~2020.03.20 |
| 3 | 500,000,000 원 | 500,000,000 원 | 3,500 원 | 2016.07.13~2020.07.10 |

1. 신주인수권부사채

|  |  |  |  |  |
| --- | --- | --- | --- | --- |
| 회수 | 총 발행가액 | 미 행사금액 | 행사가액 | 행사기간 |
| 해당사항 없음. | | | | |

1. 주식매수선택권

|  |  |  |  |  |
| --- | --- | --- | --- | --- |
| 부여받은 자 | 주식수 | 행사가액 | 행사기간 | 행사방법 |
| 박진철 | 80,000 | 750원 | 2016.07.01~2020.06.30 |  |
| 한상욱 | 50,000 | 750원 | 2016.07.01~2020.06.30 |  |
| 신문철 | 30,000 | 750원 | 2016.07.01~2020.06.30 |  |
| 최솔미 | 16,000 | 750원 | 2016.07.01~2020.06.30 |  |
| 김효윤 | 16,000 | 750원 | 2016.07.01~2020.06.30 |  |
| 박보라미 | 7,980 | 750원 | 2016.07.01~2020.06.30 |  |















1. 회사는 설립 이후 본 계약의 체결일 현재까지 주식의 발행에 있어서 가장납입을 한 사실이 없으며 이해관계인이 보유하고 있는 회사의 주식은 전항 기재와 같고 회사는 이를 자신의 계산으로 취득하였고 가장납입 한 사실이 없다.
2. 회사는 계열사 또는 특수관계인에 대하여 통상의 범위에서 벗어날 정도로 회사에 불리한 매출거래, 보증 또는 담보제공 등을 한 사실이 없다.
3. 자산에 관한 사항
   * 1. 회사는 현재 사용중인 부동산, 동산, 기계, 차량, 사무실 기기 및 기타 영업에 필요한 모든 권리, 물건 등은 적법하게 회사의 소유로 되어 있거나, 회사가 사용할 수 있는 권한을 보유하고 있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2. 회사는 현재 보유 사용하고 있는 모든 특허권을 포함한 지적재산권 기타 무형자산은 회사가 적법한 권리를 가지고 있으며, 제3자의 권리를 침해하거나 제3자로부터 권리를 침해 받고 있지 않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3. 회사는 통상적인 사업경로에 따른 제품의 판매 등을 제외하고 회사의 자산이나 권리를 매매, 교환 또는 기타 방식으로 처분하지 아니하였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4. 부채에 관한 사항
5. 회사의 담보제공 및 입보 내역은 아래 기재와 같다.

|  |  |  |  |  |  |
| --- | --- | --- | --- | --- | --- |
| 금융기관 | 제 공 담 보 | | 입 보 내 역 | | 비 고 |
| 담보종류 | 설정액  (실현가) | 한 도 | 사 용 액 | 2017.12.31 기준 |
| 기업은행 | 기술보증기금 | 450,000,000 | 500,000,000 | 500,000,000 |  |
| 기업은행 | 지급보증 | 200,000,000 | 200,000,000 | 0 | 대표이사 |
| 기업은행 | 부동산담보 | 460,000,000 | 460,000,000 | 460,000,000 | 대표이사  개인재산  담보제공 |
| 기업은행 | 지급보증 | 300,000,000 | 300,000,000 | 300,000,000 | 대표이사 |
| 기업은행 | 부동산담보 | 400,000,000 | 400,000,000 | 0 | 대표이사  개인재산  담보제공 |
| 외환은행 | 기술보증기금 | 990,000,000 | 1,100,000,000 | 1,100,000,000 |  |
| 외환은행 | 지급보증 | 132,000,000 |  |  | 대표이사 |
| 신한은행 | 지급보증 | 960,000,000 | 800,000,000 | 800,000,000 | 대표이사 |



1. 회사의 금융기관 차입, 회사 발행 사채 등과 관련된 계약에는 본 거래로 인하여 당해 계약에서의 기한의 이익이 상실되거나 당해 계약의 상대방이 회사에 대하여 즉각적인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내용이 포함되어 있지 않음을 회사는 진술하고 보장한다.
2. 재무제표에 관한 사항
3. 투자자에게 제공된 회사의 [2017]년 [9]월 [30]일 기준 재무제표는 대한민국에서 통용되는 기업회계기준을 포함하여 일반적으로 인정되는 회계원칙 및 관행에 따라 작성되었으며 회사의 재무상태 및 영업현황을 충실하게 반영하고 있음을 회사는 진술하고 보장한다.
4. 투자자에게 서면 고지된 것을 제외하고 상기 재무제표 기준일 이후에, 회사의 재무상태, 자산 및 부채, 영업에 불리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대한 변경이나 변동사항은 없음을 회사는 진술하고 보장한다.
5. 회사가 최선의 노력으로 파악한 결과 상기 재무제표에 기재되지 아니한 부외부채(우발채무 포함) 및 부외자산은 실사자료로 제시한 바와 같고, 실사자료에 나타나지 아니한 사항으로서 투자자의 본 계약체결 및 거래완결에 영향을 줄 만한 중대한 부외부채 및 부외자산은 없다.
6. 법령 위반, 소송 등에 관한 사항
7. 회사는 현재 영위하고 있는 사업에 필요한 정부 인허가 등을 모두 적법하게 보유하고 있으며, 이 인허가 등이 취소될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
8. 회사는 회사의 자산(부동산, 설비, 임차물 및 장비 등) 및 사업활동과 관련하여, 지역제한, 안전, 공해 및 환경, 노동, 공정거래 관련 법규를 포함하여 회사와 그 생산과정 및 제품에 적용되는 제반법령, 규정 및 명령을 준수하였으며, 부당하게 임금, 퇴직금 등을 미지급한 사실이 없다.
9. 투자자에게 서면 고지된 것을 제외하고, 회사의 사업에 중요한 영향을 미치는 것으로서 현재 진행되는 소송(보전소송 포함), 중재 또는 행정절차 기타 분쟁은 없음을 회사는 진술하고 보장한다.
10. 회사는 현재 보유하고 있는 지적재산권과 관련하여 소송, 중재 또는 기타 분쟁이 없으며, 추후 분쟁의 위험에 처해 있지 않다.
11. 회사는 주주총회 및 이사회 관련 제반 서류를 작성 비치하고 있으며, 그와 관련된 법규 위반사항이 없다.
12. 세금, 보험 등에 관한 사항
13. 회사는 국세, 지방세 등 고지된 납세 의무를 이행하였고, 납부할 의무가 있는 것으로 미납된 세금은 없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14. 회사는 회사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제반 보험(4대 보험, 기타 영업 관련 필수적으로 가입해야 하거나 해당 업계에서 회사와 유사한 기업들이 통상적으로 가입하고 있는 보험)에 가입되어 있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15. 기타

회사는 투자자 또는 그 실사관련 자문사들에게 제공한 주주명부, 등기부등본, 정관 및 각종 계약서, 사업계획서 등 일체의 서면, 서류, 정보 기타 자료는 제공일 현재 회사에 관한 사항을 정확히 기재한 것으로서 모든 면에서 진실되고 거짓이 없으며, 중요한 사항을 생략하지 않았고, 중대한 면에서 의미를 오도하지 않는다. 회사의 임직원이 실사 과정에서 구두로 답변한 내용에 관하여도 고의 또는 과실로 허위 답변한 사실이 없음을 진술하고 보장한다. 단 사업계획서 상에 미래에 대한 예측 및 기타 사업관련계획 사항은 경영환경의 변화 등에 따라 변경될 수 있으며 실제 발생할 수도 있고 발생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제3장 이해관계인에 관한 사항**

1. 이해관계인은 투자자에 대하여 본조의 진술과 보장 사항이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모두 진실되고 거짓이 없음을 보장하고, 나아가 동 진술과 보장 사항이 허위이거나 부정확한 경우 이로 인하여 투자자가 입게 되는 모든 손해, 손실 및 비용을 회사와 연대하여 배상 또는 보상한다.
2. 이해관계인은 위 제13조에 추가하여 다음 사항에 대하여 진술하고 보장한다.
3. 이해관계인이 가지고 있는 회사의 주식은 첨부하는 주주명부의 기재와 같고, 이해관계인은 이를 자신의 계산으로 취득하였고 가장납입한 바가 없다.
4. 위 주주명부는 이해관계인과 특수관계에 있는 주주들의 이름, 관계 및 그 소유주식수를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다.
5. 이해관계인이 본 계약을 체결하고 그 내용을 이행함에 있어 법령상 또는 계약상의 제한은 존재하지 아니한다.
6. 이해관계인은 본 계약 체결일 현재 회사의 주주 또는 종업원으로서의 지위와 관련하여 제3자와 분쟁을 하고 있지 아니한다.
7. 위 제14조의 진술 사항들은 본 계약의 중요한 내용을 이루는 것으로서 이러한 사항이 허위이거나 부정확한 경우 이해관계인은 이로 인하여 투자자가 입게 되는 모든 손해, 손실 및 비용을 배상 또는 보상하여야 한다.
8. 이해관계인은 위 제14조항의 진술 사항에 영향을 미칠 사유가 발생하는 경우에는 즉시 투자자에게 그 사유를 서면으로 통지하여야 하고, 투자자의 요청에 따라 적절한 대응조치를 취하여야 할 의무를 부담한다. 본 항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효과는 위 제15조항과 같다.

**(별지2)**

**전환사채원리금상환계획표**

|  |  |  |  |  |
| --- | --- | --- | --- | --- |
| 납입기일 | 표면이자 | 보장이자 | 원금 | 계 |
| 2018.04.30 | 1,250,000 | 0 | 0 | 1,250,000 |
| 2018.07.29 | 1,250,000 | 0 | 0 | 1,250,000 |
| 2018.10.29 | 1,250,000 | 0 | 0 | 1,250,000 |
| 2019.01.29 | 1,250,000 | 0 | 0 | 1,250,000 |
| 2019.04.29 | 1,250,000 | 0 | 0 | 1,250,000 |
| 2019.07.29 | 1,250,000 | 0 | 0 | 1,250,000 |
| 2019.10.29 | 1,250,000 | 0 | 0 | 1,250,000 |
| 2020.01.29 | 1,250,000 | 0 | 0 | 1,250,000 |
| 2020.04.29 | 1,250,000 | 0 | 0 | 1,250,000 |
| 2020.07.29 | 1,250,000 | 0 | 0 | 1,250,000 |
| 2020.10.29 | 1,250,000 | 0 | 0 | 1,250,000 |
| 2021.01.29 | 1,250,000 | 0 | 0 | 1,250,000 |
| 2021.04.29 | 1,250,000 | 0 | 0 | 1,250,000 |
| 2021.07.29 | 1,250,000 | 0 | 0 | 1,250,000 |
| 2021.10.29 | 1,250,000 | 0 | 0 | 1,250,000 |
| 2022.01.29 | 1,250,000 | 84,929,280 | 500,000,000 | 586,179,280 |
| 합계 | 20,000,000 | 84,929,280 | 500,000,000 | 604,929,280 |

※ 회사는 상기 납입기일에 표면이자, 보장이자, 원금을 지급할 시에 투자자의 수탁기관의 모계좌인 중소기업은행 001-578485-04-017에 납입하여야 한다.

**(별지3)**

**투자금의 사용용도**

회사는 본 약정에 의하여 투자자로부터 받은 자금을 다음과 같은 용도에 사용하여야 하며 투자자는 투자금이 사용용도에 맞게 사용되었는지를 투자자가 지정하는 회계법인을 통하여 본 투자약정 이후 언제든지 투자금 사용내역에 대한 실사를 진행할 수 있다.

|  |  |  |
| --- | --- | --- |
| 용 도 | 금 액 | 비 고 |
| 판권 구매자금 및 운영자금 | 500,000,000원 |  |
| 합 계 | 500,000,000원 |  |

(첨부)

**퇴사제한 및 경업금지 약정서**

* + - * 1. **퇴사제한**
  1. **퇴사가 제한되는 이해관계인**

|  |  |  |
| --- | ---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주 소 |
| **김상윤** | **631105-1237617** | **서울특별시 강남구 일원로 120, 105동 1208호(일원동,샘터마을)** |

* 1. **퇴사의 제한 기간**

**2018. 1. 30. ~ 2022. 1. 29**

* 1. **위반시의 효과**

위약벌 : 본 계약 제27조 제1항 제4호에 해당, 관련한 투자자의 권리 행사 가능

* + - * 1. **경업금지약정을 체결하는 자**

1. 투자자 :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란의 서명날인으로 갈음

2. 회사 :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란의 서명날인으로 갈음

3. 이해관계인 : 당사자 및 이해관계인란의 서명날인으로 갈음

4. 이해관계인 이외의 임직원[[1]](#footnote-1)

|  |  |  |  |
| --- | --- | --- | --- |
|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서 명 | 날 인 |
|  |  |  |  |

* + - * 1. **경업금지약정의 내용**

제1조 (계약의 목적)

본 경업금지약정은 회사의 이해관계인 및 주요임직원으로 하여금 일정기간 동안 회사의 영업과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을 금지시킴으로써 회사의 영업을 보호함은 물론 투자자의 투자의 실효성을 확보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 (경업지위의 취임금지)

① 이해관계인 및 본 계약서에 서명날인한 이해관계인 이외의 임직원(이하 ‘경업금지의무자’라 한다)은 회사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투자자 및 회사의 허락이 없이는 다른 기업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피용자가 될 수 없다.

② 경업금지의무자는 회사를 퇴사한 날로부터 [1]년의 기간 동안 투자자 및 회사의 허락이 없이는 회사의 영업부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부류의 기업의 무한책임사원, 이사, 피용자가 될 수 없다.

제3조 (경업거래의 금지)

경업금지의무자는 회사에 재직하는 기간 동안 및 회사를 퇴사한 날로부터 [1]년의 기간 동안 투자자 및 회사의 허락이 없이는 자기 또는 제3자의 계산으로 회사의 영업부류와 동일 또는 유사한 영업부류에 속하는 거래를 하거나 기업을 운영할 수 없다.

제4조 (법인의 설립과 다른 법인에의 출자)

회사가 투자자의 서면동의에 의하여 신설법인을 설립하거나 다른 법인에 출자하는 경우 투자자는 자신의 지분율에 상응하게 신설법인 또는 다른 법인의 지분을 취득할 권리를 갖는다.

제5조 (약정의 종료)

회사가 공개시장에 주권을 상장 또는 등록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한 시점에 이르러 본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한다

제6조 (위반의 효과)

① 경업금지의무자가 본 약정을 위반하는 경우에는 투자약정서 본문 제28조의 해지 사유가 된다.

② 경업금지의무자가 제3조의 규정을 위반한 경우 투자자 또는 회사는 경업금지의무자가 얻은 이득의 양도를 청구할 수 있다.

③ 이해관계인 이외의 경업금지의무자가 본 약정을 위반한 경우 위반자는 회사에게 그로 인하여 입은 손해를 배상하여야 한다.

1. 자필로 서명하시고, 인감을 날인하십시오. [↑](#footnote-ref-1)